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시행('19.2.15.)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건설공사장 세부이행지침 안내

- 근거 :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제18조(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)
- 대상 :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사업장[건설업] 전체
- 내용 :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변경·조정(#붙임1 세부이행지침 참고)
- 제출 : 민간부문 공사장 관리카드 (관련 신고증명서 수령 시 제출)
 - * 안내문자 발송을 위한 현장담당자(정,부) 휴대전화번호 필수
 - * 공공발주 공사장은 발주부서에 제출한 관리카드 제출
 - * 관리카드(서식) : 수지구청 홈페이지-민원안내-민원서식편람(산업환경과-검색-'민간 부문 공사장 관리카드') 참고
-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: 제출한 비상저감조치 이행계획 준수
 - * <u>미이행 시</u>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

건설공사장 공사시간 변경·조정 세부이행지침

- □ (공사시간 변경·조정)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살수차 운영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강화하고, 공사장 운영을 단축·조정
 - ※ (적용예외) 운영 단축·조정이 국가인전보장·국방·통일·외교·에너지 수급 및 국민의 생명·신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자체장·중앙행정기관장이 판단하는 사업장 등
 - (대상공사장)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 공사장은 법적의무 대상
 - 비산먼지 발생 사업 규모 미만이더라도 관급공사장은 비상저감 조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자발적 협약 등 추진
 - (**주요내용**) <u>관급공사</u>는 공사시간을 50% 이상 단축하고, <u>민간공사</u>는 공사시간을 **50% 이상 조정**
 - ※ 공사시간 단축(예) 발령일 10시~16시 공사 ☞ 단축 3시간은 저농도시 추가 작업) 공사시간 조정(예) 6시~15시 공사 ☞ 9시~18시 공사. 출퇴근시간대 회피)
 - 공사시간 단축·조정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터파기, 기초공사 등 비산먼지 다량발생 공정이 진행중인 공사장(건축물 축조·해체공사장, 토목공사장, 토공사 및 정지공사장 등)에 한정
 - 공사 중에는 인근도로 청소 강화, 실기 및 내리기 공정 중 살수량 증대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 강화
 - ※ 저공해 미조치된 노후건설기계 사용 자제 권고
- □ (지도점검) 민감계층 이용시설(학교·어린이집 등), 주거단지 등 생활공간 주변 공사장 운영실태 집중 지도점검
 - (점검시간)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09~18시
 - (점검내용) 사전 제출된 비상저감조치 이행계획 및 대기법상 비산먼지 억제조치 기준 준수 여부

비상저감조치 이행 확인

- 이행대상 공사장 목록 및 관리카드를 확인하여 점검대상 사업장 선정
- 공사시간 변경·조정, 비산먼지 억제조치 강화 등 비상저감조치 이행방안 확인

비산먼지 저감 조치 기준(대기법 시행규칙 별표 14) 준수 점검

- 통합지도점검규정 지도점검표(별지 제2호 서식)
-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사항, 비산먼지 저감 조치 기준 준수 여부 등 점검